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2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 이유

- 가.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수·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나. 서울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등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다.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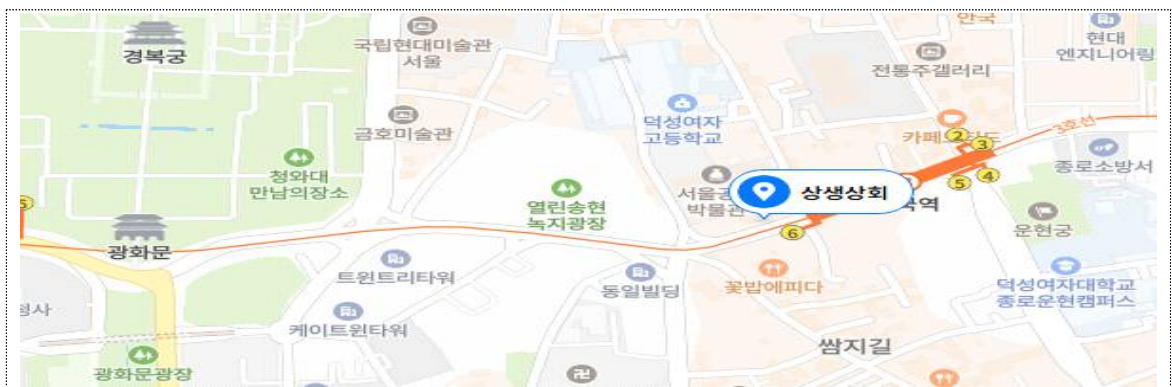
- 지역과의 우호 교류 확대 및 지역 간 상생 교류사업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유연한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 지역 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관리 및 운영, 정기 기획전 기획·운영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
- 지역 상생 교류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그 밖에 지역 상생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 개관일자 : '18.11.3.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지상 1층)
- 규모 : 413㎡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4.1.1.~'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 금 1,406백만원('23년 예산)

아. 심의결과 : 적정('23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대외협력과 김현정 (☎ 2133-6672)